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16. 4. 14.

임실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신속하게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2조)

*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외 22건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16. 3. 8. ~ 3. 28.)결과 : 부서 의견수렴

2)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3) 관련근거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정비 대상(제2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 치 법 규 명	정비대상 서식	
			(현행) 주민등록번호	(개정) 생년월일
1	농업정책과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2	문화관광 치즈과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3	문화관광 치즈과	임실군 오수의견 위리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4	안전관리과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5	행정지원과	임실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7호	
6	행정지원과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별지 제3호	
7	재무과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8	재무과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9	환경보호과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10	환경보호과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11	환경보호과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12	환경보호과	임실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13	주민복지과	임실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별표	
14	건설과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15	건설과	임실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16	지역경제과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17	지역경제과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18	보건사업과	임실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제2호	
19	의료지원과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20	농촌지원과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21	상하수도 사업소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지 제1호	
22	상하수도 사업소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23	상하수도 사업소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김학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